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2-7
----------	--------

제출년월일 : 2002. . .

제 출 자 : 김제시장

1. 개정이유

2001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1993년부터 적용되어 온 현행 시설부담금을 현실화토록 경영개선명령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혜택 부여로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읍·면과 동지역으로 이원화된 시설부담금을 산출기준의 15%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3년차 일원화 함

- 동 지역 : 현행 13mm 57천원 → 65천원(증 8천원)

- 읍·면지역 : 현행 13mm 30천원 → 42천원(증12천원)

나. 중수도 사용자에게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

3. 참고사항

- 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재검토 ----- 7~16p
- 2001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개선명령시달 공문 ---- 17~21p
- 타시 시설분담금 현황 ----- 22~23p
- 물수요관리 평가결과 통보 공문 ----- 24~25p
- 중수도관련 법규정 ----- 26~28p
- 입법예고(2001.10.27~11.15) 결과 : 의견 없음.

김제시조례 제 호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분 담 금(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계량기 구경별	구 분	부 담 금 액	비 고
평 균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정수한다.
13mm		65,000	
20mm		126,000	
25mm		243,000	
32mm		416,000	
40mm		620,000	
50mm		1,151,000	
75mm		2,323,000	
100mm		4,217,000	
150mm		8,679,000	
200mm		13,695,000	
250mm		28,754,000	
300mm		36,209,000	

[별표 2]

시 설 분 담 금(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계량기 구경별	구 분	부 담 금 액	비 고
평 균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3mm		42,000	
20mm		83,000	
25mm		159,000	
32mm		254,000	
40mm		366,000	
50mm		676,000	
75mm		1,372,000	
100mm		2,493,000	
150mm		5,130,000	
200mm		8,100,000	
250mm		28,754,000	
300mm		36,209,0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37조(요금등의 감면)-----</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사용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u></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 설 분 담 금(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1] 시 설 분 담 금(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계량기 구경별	구 분 부 담 금 액	비 고	계량기 구경별	구 분 부 담 금 액	비 고
평 균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 별 분담금 차액을 징 수한다.	평 균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 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한다.
13mm	57,000		13mm	65,000	
20mm	95,000		20mm	126,000	
25mm	190,000		25mm	243,000	
32mm	306,000		32mm	416,000	
40mm	440,000		40mm	620,000	
50mm	880,000		50mm	1,151,000	
75mm	1,760,000		75mm	2,323,000	
100mm	3,300,000		100mm	4,217,000	
150mm	6,600,000		150mm	8,679,000	
200mm	11,000,000		200mm	13,695,000	
250mm			250mm	28,754,000	
300mm		300mm	36,209,000		
[별표 2] 시 설 분 담 금(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시 설 분 담 금(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계량기 구경별	구 분 부 담 금 액	비 고	계량기 구경별	구 분 부 담 금 액	비 고
평 균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 별 분담금 차액을 징 수한다.	평 균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 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한다.
13mm	30,000		13mm	42,000	
20mm	50,000		20mm	83,000	
25mm	100,000		25mm	159,000	
32mm	146,000		32mm	254,000	
40mm	200,000		40mm	366,000	
50mm	400,000		50mm	676,000	
75mm	800,000		75mm	1,372,000	
100mm	1,500,000		100mm	2,493,000	
150mm	3,000,000		150mm	5,130,000	
200mm	5,000,000		200mm	8,100,000	
250mm			250mm	28,754,000	
300mm		300mm	36,209,000		